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영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69
----------	------

발의연월일 : 2025. 6.

발의의원 : 박영동 의원,  
김보경 의원, 양은숙 의원

## 1. 개정이유

공동주택 내에서 공동주택관리를 위해 근무하는 노동자의 범위를 경비노동자뿐만 아니라 관리사무소 직원, 미화원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여 상호 존중하는 공동체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제명을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
- 나. 조문상 용어를 ‘경비노동자’에서 ‘관리노동자’로 변경
- 다.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의 책무 규정 신설(안 제4조의2)
- 라. 교육 통합 실시 규정 신설(안 제7조제2항)

## 3. 개정 조례안 : “붙임”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 나.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붙임)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경비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관리노동자의 인권보호”로, “경비노동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를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의”로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동주택”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소재하면서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2. “관리노동자”란 공동주택에서 공동주택관리를 위해 근무하는 사람으로 관리사무소장, 관리사무소의 직원, 경비원, 미화원 등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에 따른다.

4. “주택관리업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법 제2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

나.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한 경비·청소 용역업체 등으로서 관리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

5. “기본시설”이란 근무공간과 휴게실, 화장실, 샤워시설, 냉·난방설비 등 관리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기본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정하는 것 외에는 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3조제1항 중 “경비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관리노동자의 인권보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비노동자의”를 “관리노동자의”로,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 건설 사업자가 경비노동자에게 기본시설을 제공할”을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으로 하여금 관리노동자에게 기본시설을 제공할”로, “권고”를 “노력”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경비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등의 책무)”를 “(관리노동자의 권리)”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관리노동자의 권리) 관리노동자는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이 침해되지 않는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의 책무) ① 입주자등 및 주택관

리업자등은 법 제65조의2에 따라 관리노동자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군수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 중 “경비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관리노동자의 인권보호”로, “경비노동자의 근무환경”을 “관리노동자의 근무환경”으로, “경비노동자에”를 “관리노동자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비노동자”를 “관리노동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경비노동자의”를 “관리노동자의”로, “경비노동자 인권”을 “관리노동자 인권”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비노동자”를 “관리노동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경비노동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를 받아”를 “관리노동자가 업무 수행 중”으로, “피해가 발생한”을 “피해를 입은”으로, “지원”을 “지원 및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경비노동자”를 “관리노동자”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경비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관리노동자의 인권보호”로, “사항의 지원”을 “사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기본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에는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정산 등과 관련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의 제목 “(교육, 홍보 등)” 을 “(교육·홍보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경비노동자를” 을 “관리노동자를” 로, “경비노동자 차별금지” 를 “관리노동자 차별금지” 로,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를 “홍보를 할 수 있다”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법 제32조 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제13조에 따른 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제3항(중전의 제2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경비노동자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을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에 관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8조 중 “경비노동자의 인권 보호” 를 “관리노동자의 인권보호” 로, “중앙행정기관,” 을 “국가 또는” 으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  
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비노동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p> <p>2. “경비노동자”란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p> <p>3. “입주자등”이란 공동주택</p>	<p style="text-align: center;"><u>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 관 리노동자의 인권보호 ----- ----- 공 동주택 관리노동자의 ----- ----- -----.</p> <p>제2조(정의) ----- -----.</p> <p>1. “공동주택”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소재하면서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p> <p>2. “관리노동자”란 공동주택에서 공동주택관리를 위해 근무하는 사람으로 관리사무소장, 관리사무소의 직원, 경비원, 미화원 등을 말한다.</p> <p>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에</p>

현 행	개정안
<p><u>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자치 의결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 용역업체로서 경비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u></p> <p><u>4. “기본시설”이란 경비노동자의 근무공간, 휴게실, 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u></p> <p><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p><u>따른다.</u></p> <p><u>4. “주택관리업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u></p> <p><u>가. 법 제2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u></p> <p><u>나.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한 경비·청소 용역업체 등으로서 관리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u></p> <p><u>5. “기본시설”이란 근무공간과 휴게실, 화장실, 샤워시설, 냉·난방설비 등 관리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기본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시설을 말한다.</u></p> <p><u>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정하</u></p>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군수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u>경비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과 이와 관련한 시책 발굴 및 추진에 노력</u> 하여야 한다.</p> <p>② 군수는 <u>경비노동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 건설 사업자가 경비노동자에게 기본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권고</u>하여야 한다.</p> <p>제4조(<u>경비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등의 책무</u>) ① <u>경비노동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u></p> <p>② <u>입주자등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군수의 인권보호 및 증진</u></p>	<p>는 것 외에는 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p> <p>제3조(군수의 책무) ① ----- ----- ----- <u>관리노동자의 인권보호</u> ----- ----- ----- -----.</p> <p>② ----- <u>관리노동자의</u> ----- ----- <u>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으로 하여금 관리노동자에게 기본시설을 제공할</u> ----- ----- <u>노력</u>-----.</p> <p>제4조(<u>관리노동자의 권리</u>) <u>관리노동자는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이 침해되지 않는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u></p>

현 행	개 정 안
<p>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lt;신 설&gt;</p>	<p><u>제4조의2(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의 책무) ①</u>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은 법 제65조의2에 따라 관리노동자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군수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5조(실태조사 및 개선권고) ① 군수는 경비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그 차별 여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등 경비노동자의 근무환경에 관한 실태조사나 경비노동자에 대한 심리검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p> <p>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나 심리검사 결과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경비노동자에</p>	<p>제5조(실태조사 및 개선권고) ① -- -- 관리노동자의 인권보호-----</p> <p>-----</p> <p>-----</p> <p>관리노동자의 근무환경-----</p> <p>----- 관리노동자에 -----</p> <p>-----.</p> <p>② -----</p> <p>-----</p> <p>----- 관리노동자-</p>

현 행	개 정 안
<p>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p>	<p>----- -----.</p>
<p>③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나 심리검사 결과 <u>경비노동자의 인권보호가 미흡한 공동주택에는 경비노동자 인권 관련 사항을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u></p>	<p>③ ----- ----- <u>관리노동자의</u> ----- <u>관리노동자 인권</u> ----- -----.</p>
<p><b>제6조(지원의 범위)</b> ① 군수는 <u>경비노동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u></p>	<p><b>제6조(지원의 범위)</b> ① ----- <u>관리노동자</u>----- ----- -----.</p>
<p>1. <u>경비노동자를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그 지원</u></p>	<p>1. <u>기본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u></p>
<p>2. <u>경비노동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를 받아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률 서비스 연계 지원</u></p>	<p>2. <u>관리노동자가 업무 수행 중 ----- ----- 피해를 입은----- 지원 및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u></p>
<p>3. <u>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u></p>	<p>&lt;삭 제&gt;</p>
<p>4. <u>경비노동자가 자발적으로</u></p>	<p>4. <u>관리노동자</u>-----</p>

현 행	개정안
<p>모여 고용·노동 조건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도록 협의체 지원</p>	<p>----- ----- -----</p>
<p>5. 그 밖에 <u>경비노동자의 인권 보호</u>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u>사항의 지원</u></p>	<p>5. ----- <u>관리노동자의 인권보호</u> ----- ----- <u>사항</u> -----</p>
<p>&lt;신 설&gt;</p>	<p>② <u>제1항에 따른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에는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정산 등과 관련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u></p>
<p><u>제7조(교육, 홍보 등) ①</u> 군수는 <u>경비노동자를 포함하여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경비노동자 차별금지, 기본 시설의 설치·이용 및 인권 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p>	<p><u>제7조(교육·홍보 등) ①</u> ----- <u>관리노동자를</u> ----- ----- <u>관리노동자 차별금지</u> ----- ----- <u>홍보를 할 수 있다.</u></p>
<p>&lt;신 설&gt;</p>	<p>② <u>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법 제32조 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제13조에 따른 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u></p>



## □ 「공동주택관리법(법률)」(2024.3.19. 타법개정, 2025.1.1. 시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 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 다.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 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다.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 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입주자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
3. “공동주택단지”란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를 말한다.
4. “혼합주택단지”란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5.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말한다.

6. “사용자”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한다.
7. “입주자등”이란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8. “입주자대표회의”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한다.
9. “관리규약”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18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정하는 자치규약을 말한다.
10.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 나.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 다. 주택관리업자
  - 라. 임대사업자
  - 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시설물 유지·보수·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1. “주택관리사보”란 제67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사보 합격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12. “주택관리사”란 제67조제2항에 따라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13. “주택관리사등”이란 주택관리사보와 주택관리사를 말한다.
14. “주택관리업”이란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등으로부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업(業)을 말한다.
15. “주택관리업자”란 주택관리업을 하는 자로서 제5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16. 삭제 <2016. 1. 19.>
17. 삭제 <2016. 1. 19.>
18. “장기수선계획”이란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제29조제1항에 따

라 수립하는 장기계획을 말한다.

19. “임대주택”이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20. “임대사업자”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

21. “임차인대표회의”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에 따라 준용되는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주택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2조(안전관리계획 및 교육 등)**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단지의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과 방법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방법교육 및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1.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시설물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정된 사람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방법교육 및 안전교육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 또는 법인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방법교육: 관할 경찰서장 또는 제89조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법인

2.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 관할 소방서장 또는 제89조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법인

3.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제89조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법인

**제65조의2(경비원 등 근로자의 업무 등)** ① 공동주택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비업

자(「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를 말한다)는 「경비업법」 제7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절한 보수를 지급하고,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행위
2.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행위

④ 경비원 등 근로자는 입주자등에게 수준 높은 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2023.11.10. 제정, 2023.11.10. 시행)

제13조(공동주택관리 교육) ① 군수는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 등 또는 관리주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공동주택관리·운영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상위기관에서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 관련 교육과정 또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온라인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에 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기본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등에 예산이 소요될 수 있음(안 제6조)
- 관리노동자 인권 교육·홍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할 경우 위탁수행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안 제7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 개정은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정의 확대를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업 규모나 대상이 특정되어 있지 않음
- 기본시설 설치,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인권교육 및 홍보 등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등 관련 조례에 따른 사업으로 시행될 수 있어, 해당 조례의 적용 여부와 구체적 추진 방식에 따라 소요 예산이 달라질 수 있음
- 특히, 정신건강 서비스는 세부적인 추진계획 수립과 관련 기관 협의가 필요하여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비용을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

작 성 자

소 속 및 직 위

달 성 군 의 회 의 원

성 명 (연 락 처)

박 영 동 (☎ 2055)